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67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이건태 · 진선미 · 정준호
박찬대 · 박지원 · 이수진
전용기 · 조인철 · 김승원
박성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책임 추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여,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에 규정된 죄
2.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 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u>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u> <u>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u> <u>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u> <u>징역에 처한다.</u></p> <p><u><신 설></u> <u><신 설></u></p>	<p>제15조(특수직무유기)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죄</u>----- ----- -----.</p> <p><u>1. 이 법에 규정된 죄</u></p> <p><u>2.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u> <u>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u> <u>하는 죄</u></p>